

2019년도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초록)

1

회의개요

- 일시: 2019. 06. 15.(토), 17:10~18:25
- 장소: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 거문도 C실
- 참석자
 - 의장: 회장 유준상
 - 출석대의원: 재적대의원 19명 중 11명 출석
 김정철(부산), 김종민(울산), 강왈수(강원), 최철희(충북),
 박동희(전북), 차정섭(전남), 김창수(경북), 오용덕(제주),
 채희상(레이저), 이현승(옵티미스트), 최홍석(J24),

2

논의결과(주요내용)

I. 전차회의록 초록

1.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 (2019.04.19.개최) : 원안 접수

II. 보고사항

1. 2019년도 수정 사업계획 및 예산

가. 주요내용

- 대한요트협회장배와 제1회 보성군수배요트대회(가칭) 추가
- 대한체육회가 지원하는 국가대표 국외훈련 외 2회 추가
- 2019년도 예산 수정(안) 요약

세 입			세 출	
관	항	금 액	관	금 액
자 체 ₩376,750,502	찬조금	254,800,000	국가대표강화훈련	1,413,106,159
	기금과실금	73,096,332	후보선수육성	196,465,460
	자체수입	48,854,170	청소년대표육성	182,651,500
국민체육 진흥기금 (대한체육회) ₩2,126,880,964	국가대표강화훈련	1,214,265,694	국제체육교류	23,644,990
	후보선수육성	191,119,260	학교체육활성화	152,100,000
	청소년대표육성	182,051,500	생활체육활성화	4,500,000
	국제체육교류	5,186,400	전국&국제대회개최	344,237,090
	학교체육활성화	152,000,000	국제전문인력사업	41,799,600
	국내종합대회지원	18,237,590	전문인력양성	15,200,000
	국제전문인력사업	41,799,600	국내회의개최	13,482,700
	체육지도자	1,200,000	인건비	202,645,466
	경기력향상비	172,000,000	운영비	81,950,516
	회원종목단체지원	149,020,920	2018년 미지급금	74,207,985
보조금 ₩242,360,000	대회지원금	242,360,000		
합 계		2,745,991,466	합 계	2,745,991,466

나. 참석자 주요발언

- (강왕수) 9월 중 개최 예정인 협회장배전국요트대회와 관련하여 장애인 요트대회가 9월 11일 개최 예정이니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정해야 함.
- (오용덕) 보성군수배전국요트대회와 관련하여 중앙협회는 군단위 보다는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개최해야하지 않을까 함.
- (의장) 지적사항 반영하여 전남도 차원의 전남협회 주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다. 논의 결론: 원안 접수

2. 각종 위원회 구성

가. 주요내용

- 경기력향상위원회, 대회위원회, 심판위원회, 기술위원회, 인사위원회 구성 결과를 보고함.
- 유소년육성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외양세일링위원회, 국제대회유치위원회, 국제위원회, 선수위원회 및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구성 중임.

나. 참석자 주요발언

- (채희상) 인사위원회에 김형태 국가대표 감독이 들어있는데, 국가대표 감독은 협회로부터 봉급을 받는 사람인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역할을 하는데 적합한지 의문스러움. 선수위원회 등 좋은 역할 할 때가 많은데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음.
- (의장) 채희상 회장께서 요트계에서 한 명을 추천해주세요.
- (최홍석)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우리요트계의 핵심인데 9명의 위원 중 올림픽, 아시안게임 출전한 국가대표출신자가 없는 것 같은데 경기력향상 위원회에 이러한 분이 빠져서 아쉽다는 생각임.
- (의장) 최홍석 대의원께서 얘기한 뜻을 받들어 최홍석 회장이 추천해주길 바랍.

다. 논의 결론: 원안 접수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 : 원안 접수

가. 주요내용

- 대한체육회로부터 「회원종목단체규정」개정 알림 접수 (2019.06.04.)
- 주요 개정 내용
 - 상임이사회 제도 폐지
 - 체육회 정관을 준용하여 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시 의결정족수 명

확화

- 체육회 정관을 준용하여 임원의 해임안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 제공
-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준용하여 개정
- 임원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단체 중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체육관련 법정법인 등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적용
- 임원 결격사유 중 4대 주요비위 중 폭력·성폭력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징계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명확화
- 체육계 성폭력 대책 관련 후속조치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중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 문화체육관광부 검토 요청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관변경 시 이사회 검토 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의 검토 의견이 협회 총회 이전에 반영되도록 함
(기존에는 협회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개정안을 체육회에서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어, 문체부의 최종 승인 정관이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과 상이할 수 있었음)
- 문화체육관광부 검토 요청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경영공시 관련하여 공시항목 중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을 「이사회 및 총회의 결과」로 현실화
- 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에서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현실화

나. 참석자 주요발언: 없음

다. 논의 결론: 원안 접수

Ⅲ. 심의사항

1. 임원 선임

가. 주요내용

- 정관 제18조(임원)와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따라
-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2019.4.19.)에서 임기가 종료되는 감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행정감사는 김순교 강원도요트협회장을 선임하였으며 회계감사는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사를 선임하기로 의결하였음.
- 정관 제22조 제3항 제4호 따른 공모 임원 선임은 2019.04.29. 대한요트협회 홈페이지에 2019.5.3. 13시를 접수 기한으로 임원 공모를 공고하여, 접수된 지원서를 회장 업무 인계위원회가 검토 하여 회장에게 추천하였음.

○ 임원 추천(안)

1) 이사

연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비고
1	이사	강수림	47.04.13.	성심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제14대 국회의원 (1992-1996)		
2	이사	주봉노	59.11.28.	위니스건설 회장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부이사장		
3	이사	김판규	59.02.04	세종대 석좌교수 前해군참모차장		
4	이사	김충희	66.01.16.	부안변산요트마리나대표 전북요트협회 전무이사		
5	이사	허준영	69.05.20	(사)스포츠닥터스 이사장		
6	이사	박종열	52.12.14.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가천대 명예교수		
7	이사	이근우	60.07.22.	인천대 상임감사 前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8	이사	민기례	48.01.20.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		여성
9	이사	송영언	54.07.06.	前 스포츠동아 대표이사 사장		
10	이사	이성욱	71.11.28.	(주)에스여주 회장		
11	이사	김한섭	58.07.19.	(주)용진 대표이사		
12	이사	김한울	74.02.25.	(주)진아 총괄 부장		
13	이사	조대용	69.09.14.	울산대 스포츠과학부 겸임교수		울산협회 전무
14	이사	엄용대	56.02.19.	대구영남매일 국장		경북협회 수석부회장
15	이사	임진영	72.04.07.	여수시요트협회 전무		
16	이사	방은준	78.05.07.	한국오피티미스트협회 이사		여성
17	이사	이재형	68.04.15.	한국해양대 해양체육과 교수		
18	이사	전지훈	74.09.20.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19	이사	최고봉	76.10.04.	천하건설(주) 이사		
20	이사	여주호	67.02.28.	청솔관세법인 총괄대표 / 관세사		
21	이사	이재호	54.04.06.	극동대 교수 前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		공모
22	이사	정진우	52.03.01.	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		공모
23	이사	이미애	59.11.27.	동부산대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공모, 여성
24	이사	김용성	58.05.30.	(주)에너지대표 前 광주 봉선동 성당 사목회장		공모
25	이사	안병태	56.05.23.	군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국기원 운영이사		공모
26	이사	천경파	72.08.31.	일본 NKN (주)대표이사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이사		공모
27	이사	김종례	55.10.20.	한국BBS중앙연맹 부총재		공모, 여성

2) 부회장

연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비고
1	부회장	강수림	47.04.13.	성심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제14대 국회의원 (1992-1996)		
2	부회장	주봉노	59.11.28.	위니스건설 회장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부이사장		
3	부회장	김판규	59.02.04	세종대 석좌교수 前해군참모차장		
4	부회장	김충희	66.01.16.	부안변산요트마리나대표 전북요트협회 전무이사		
5	부회장	허준영	69.05.20	(사)스포츠닥터스 이사장		

3) 감사

연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출신(학사)/재직대학	비고
1	행정감사	김순교	63.10.13.	엔스엔티(주) 대표이사 강원도요트협회장	강원대	정기대의원 총회 선임완료 ((2019.4.19.))
2	회계감사	이찬호	72.10.25.	신아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경희대	

나. 참석자 주요발언

- (오용덕) 이사 27명으로 추천이 올라 왔는데 요트인이 수가 적은 반면 외부인사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회장님이 여기에서 수정할 의향이 있으시면 요트인들의 비율이 최소 50%, 안되면 30%정도라도 해주시면 어떨까 함.
- (의장)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요트협회를 보니 요트인들이 이사로 많이 들어가 있어도 회의 참석을 안 한 경우가 많았음. 감사의 충언을 들어보고, 오히려 요트인을 정예숫자로 하고 요트인으로 집착하지 말고 회장이 주변에 생활체육 동호인, 홍보 전문가, 재정적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국제적으로 일 할 사람 등으로 구성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음. 국회관련 업무를 하고, 서울시요트협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트인들이 가서 할 수 없고 제3자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음. 오용덕 대의원의 의견을 염두에 두고 사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트인 출신을 넣도록 하겠음.
- (최홍석) 요트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함. 20~30% 이상의 요트인 경기인 출신들이 들어가야 함.
- (의장) 추천할 사람 있으면 한 분 추천해 달라.
- (채희상) 경기운영을 오래했으며, 선수, 심판, 지도자 경력을 가진 강할 수 대의원을 추천함.

- (강왕수) 이사를 세 번 했으며 시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고사함.
- (오용덕) 인사는 오픈해서 하는 것보다 뒤에서 하는 게 좋음. 한자리를 추천받아서 가능한 선수 출신으로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겠음.
- (의장) 요트인 출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앞으로 이사회 변수가 있게 되면 요트인 출신을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그 외 한분은 요트인 출신으로 추천한다는 전제하에 의결을 해주면 좋겠음.
- (의장) 명단의 이사 및 이사 중 강수림, 주봉노, 김판규, 김충희, 허준영은 협회의 부회장으로 선임하고자함. 회계감사는 이찬호 회계사로 선임하고자 함.
- (일동) 이의 없음.

다. 논의 결론: 원안 의결

2. 명예 회장 추대

가. 주요내용

- 관련 정관 조항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추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이주영	1951.9.30.	■ 제20대 국회의원 (2017.02~ 현) 국회 부의장, 국방위원회 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2014.03.-2014.12.) ■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1978) ■ 대법원 재판연구원(1993-1994)

나. 참석자 주요발언

- (의장) 명예회장으로 전 회장을 고민하였으나 협회의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분을 모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으며, 전임 회장 중 윤영석 회장과 박순호 회장은 고문으로 모

시고 이주영 국회 부의장을 명예회장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음.

- (강왈수) 좋으신 분인데, 국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는데 괜찮은지?
- (사회자)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국회의원은 11호에 있어 해당 하지 않음.

나. 논의결론: 원안 의결

3. 카이트보딩 전국규모연맹체 가맹 승인

가. 주요내용

-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2019.4.19.)에서 「대한원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이 제명된 후속 조치로 원드서핑 단체와 카이트보딩 단체를 대한요트협회 전국규모연맹체로 가맹 시킬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권고」한다는 감사보고서가 접수됨.
- 2019년도 제5차 이사회 심의사항 제6호 「원드서핑·카이트보딩 전국규모연맹체 설치 검토」 건의 논의 결론으로 원드서핑과 카이트보딩은 분리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하기로 하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다음 총회에서 가맹 의결하기로 함.
- 카이트보딩 종목의 전국규모연맹체 가입 공고를 2019년 6월 12일 15시를 접수 기한으로 2019년 6월 5일 홈페이지 공고하여 1개 단체로부터 신청 접수 받음.
- 신청 단체 개요
 - 명 칭: 사단법인 한국카이트보딩협회
 -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356번길 5
 - 대표자: 김수범
 - 설립일자: 2012. 04. 06.
 - 회원 수: 총377명(남 299명, 여 78명)
- * 제출 서류 목록: 가맹단체 신청 공문 및 가맹신청서, 단체 연혁, 임원 명부, 협회 정관, 회원명부, 2019 사업실적 및 계획, 수지결산서, 가맹을 의결한 총회회의록

나. 참석자 주요발언

- (오용덕) 2018년 속초 해양제전에 경기에 참가하겠다고 모였는데 카이트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대회를 보이콧했다고 한 사람이 대표를 해도 될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음.

- (최홍석) 제가 알기로는 당시 경기운영위원들 파견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 보이콧을 했다고 들었음.
- (오용덕) 재발방지책이 있는 상태에서 통과가 되면 좋겠음.
- (강왈수) 이 단체가 사단법인인데 지부에 사단법인을 둘 수 있는가?
- (사회자) 예를 들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장애인요트연맹이 우리협회의 전국규모연맹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철희) 우리협회 정관 11조를 준수하겠다고 서약하는 직인을 찍었으니 우리 정관을 따르겠다는 뜻일 것임.
- (김정철) 앞에서 말한 문제는 제도안에 안 들어 와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우리에게 가맹이 되면 잘 따를 것으로 보임.
- (의장) 대한체육회도 사단법인이고 대한요트협회도 사단법인인 것을 볼 때 연맹체가 사단법인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나. 논의결론: (사)한국카이트보딩협회의 가맹 승인 의결

V. 기타 사항

1. 기타 의견

- (김정철) 선수등록과 관련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이 되었는데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선수 등록을 통합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최홍석) 회의 중 추천하라고 한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에 이재철을 추천함.

2. 회의록 공증위한 기명날인 대의원 지정

- 김정철 대의원

(18:25 의장의 폐회 선언)